

차 례

소개·····	 	 2
Hot Issue · · · · · · · · · · · · · · · · · · ·	 	 3
한걸음 더 •••••• 주요국 연구지원 제도 동향	 	 6

R&D KIOSK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무료로 배포합니다. 상업적인 용도나 목적을 제외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KIOSK에 사용된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재가공하실 수 없습니다. 기획 ·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조사 · 편집 · 디자인: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TEL: 02-6215-1222 FAX: 02-6215-1221 www.koworc.kr info@koworc.kr

소개

정부는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체감이 충분 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현장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은 그간 정부의 연구자 중심 연구제도 개선 노력의 현장 체감을 높이고, 현장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2020년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정부차원에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공통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이에 반영된 연구제도 개선사항 중 일부는 부처별 규정에 미반영되어 과거의 규제가 여전히 현장에 적용됨
- 상급기관의 요청. 행정적 편의 등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과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가 잔존함



-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 강화와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21개의 단기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은 8개로 정리함
 - ①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원칙을 마련한다.
 - ②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를 마련한다.
 - ③ 논문게재료 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 ④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완화·폐지한다.
 - ⑤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학기별 집행을 허용한다
 - ⑥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 ⑦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 ⑧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의 분리지급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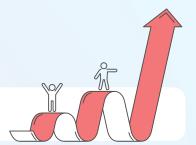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지난 5월 확정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은 현장규제 해소를 연구 현장에서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① (연구자) 자율이 존중되는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개선 ② (연구 기관) 연구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 21개를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와 이에 따른 구체적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둘러봅니다.









자율이 존중되는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개선



(연구기관)

연구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원칙 ①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원칙 규정화
 - ② 연구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 ③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성 강화
 - ④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강화

- ⑤ 연구용 S/W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 ⑥ 연구개발비 지출방식(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제한 완화
- ⑦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기별 집행 허용
- ⑧ 학사→석사, 석사→박사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허용
- ⑨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폐지
- ⑩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

3

- 행정부담 ⑪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 ①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 ⑬ 연구비 정산 시 서면증빙 부가제출 개선
 - ⑭ 협약변경 사항 통일 및 절차 간소화
 - ⑤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합리화

- ⑩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행
- ⑪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 ⑧ 연구비관리 최우수기관 우대조치 확대 시행
- ⑩ 연구비관리시스템 참여율 관리 간소화
- ② 연구장비 이용료 집행범위 확대
- ② 연구장비 실태조사 통합 실시





연구비 예산이

늦게 지급되어

인건비 지급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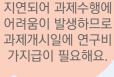
현장 목소리



연구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Hot Issue





과제협약 지연에

따라 연구비 지급이



과제선정 통보시점부터 연구를 개시하고 연구비 지급 시까지 연구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선집행 허용



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선집행 허용

※ 무분별한 활용방지를 위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승인 필요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는 집행이 안돼요. 사업은 과제종료 후에도 성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제 종료 후에는 논문게재료 집행이 불가능해요.

圕

盙

과제종료 후 SCI급 논문 성과를 위해 약 2년 이상이 소요되어 과제기간 내 투고, 심사, 게재 완료가 어려워요.



논문게재료의 집행이 불가하여, 대학은 연구활동지원금으로 간접비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출연연은 불가능합니다.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성 강화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집행이더라도 연구자의 과거 또는 현재 수행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 인정



'대학'에만 허용하는 간접비에서의 논문게재료를 대학, 출연연 등 전체 비영리기관으로 허용 확대



출장여비 실비정산제의 예산절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연간 수만건의 증빙 처리를 위한 행정부담이 과다하고 추가 인력 등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출장 실비정산으로 인해 일일이 영수증을 확인·보관하고 사후 정산 신청을 하는 등 행정업무가 과도해져 업무몰입이 저해됩니다.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폐지



국내 출장여비 중 운임비 실비정산에서 국내 출장여비 중 운임비 정액지급으로 변경

현행 규정 상 일정 비율 이하의 연구활동비는 정산을 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시 여전히 증빙이 요구됩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연구활동비 계상 시 정산면제 비율 이상은 불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정산을 하되 일정 비율 이상으로도 계상이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연구활동비 내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직접비의 5% 이하로 계상한 경우 정산을 면제



연구활동비 내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직접비의 5% 초과 계상도 허용하되, 정산은 실시

R&D Kiosk 제74호 2020년 7월











10만원 이하 회의비에도 기관 자체 지침으로 결재 문서 및 참석자 서명이 들어간 회의록 제출이 요구됩니다.

회의록 작성 시에 내외부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요구되고 있어요.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폐지,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회의개요 명기) 제출





현행 연구비에서 간접비를 기관이 흡수하는 방식은 연구자와 대학 산학협력단 간 갈등을 초래합니다.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행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직접비/간접비 분리 시범적용 검토

연구지원인력이 연구과제 신청서 등의 제출, 사업설명회 참석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에 과제비에서 해당 경비 지원을 할수가 없습니다.



연구지원인력도 함께 회의하는 경우 회의비 집행, 출장비 지급 등이 어려워 인건비 외에도 필요한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외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 (출장비, 회의비 등)도 직접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우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산을 실시하여 제도 취지 훼손 및 동기부여가 저해됩니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은 정산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기관에서 정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구비관리 최우수기관 우대조치 확대 시행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 부처 과제에서 정산 면제(위탁정산 수수료도 면제)



한걸음 더

주요국 연구지원 제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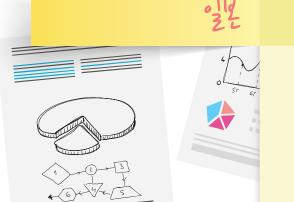


과학기술 연구에서 연구지원 제도는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걸음 더에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주요 연구지원 기관과 연구비 지원 제도를 살펴봅니다.



-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과학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건강. 번영.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안보에 힘쓰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고위험의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공학 분야에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 NSF는 2018년에 78억 8.400만 달러의 예산으로 48.300개의 제안서 중 11.700개 연구를 선정하여 2,000여 개의 기관과 38만 6,000여 명의 연구자를 지원
- 전체 예산 중 대학·학술연구기간에 55억 5.800만 달러(78%). 일반기업에 9억 5.100 만 달러(13%), 연방지원기관에 2억 2,000만 달러(3%), 기타 기관에 3억 7,200만 달러(5%)를 지원
- NSF는 연구비를 지원할 때 '탁월성 평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며, 탁월성 평가의 기준은 '지적 가치'와 '거시적 영향력'임
- 공학 및 자연과학 연구협의회(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는 영국의 기초, 전략, 응용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7개의 연구위원회 중 가장 큰 연구위원회
- EPSRC의 주요 임무: ① 공학과 물리분야에서 수준 높은 기초, 전략, 응용연구와 관련 학위 후 연수과정을 진흥 및 지원 ②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훈련된 공학자와 과학자를 양성하고 영국의 경제적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③ 공학과 물리분야에서의 자문을 제공하고, 지식을 유포시키며 공공의 이해 증진
- 예산: EPSRC의 2015~2016년 기준 예산은 1조 5,548억 원





- 일본학술진흥회(JSP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는 연구자 양성을 위한 연구지원, 국제 학술 교류 촉진 및 학술 진흥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
- JSPS는 인문사회과학부터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에 이르는 학문 연구를 지원
- 예산: JSPS의 2017년 기준 총예산은 2조 9,188억 원이며 그중 과학 연구비 예산은
- JSPS는 '종합평가(사전심사, 서면평가, 패널평가)'와 '2단계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발

자료: 한국연구재단(2019), "미국 및 일본의 연구비 지원제도 소개 - NSF/NIH/JSPS/JST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과학기술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연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